



청림 으뜸 클린 은평
친절은 마음으로
청림은 행동으로



- 일시 : 2026. 3. 12. (목) 19:00
- 장소 : 주민센터 2층 기쁨홀

“소통과 화합으로 주민 행복창조”

2026. 3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6. 3. 12.

진관동 주민자치회

진행순서

1. 개 회

2. 인사말씀

3. 운영보고

- 1)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내역
- 2) 자치회관 수강료 운영내역

4. 활동 보고 및 공유

- 1)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 2) 2026 사업 진행 현황
- 3) 주민공론장

5. 논의 안건

- 1) 2027 의제 발굴 및 접수
- 2)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안)
- 3) 운영세칙 개정(안)

6. 심의 안건

- 1) 자치회관 프로그램 변경의 건

7. 기타사항

- 1) 적십자회비 특별 모금
- 2) 주민자치회 일정(안)

8. 구· 동정 공지사항

9. 폐 회

I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6. 3. 12.(목) 19:00
- 장 소 : 진관동 주민센터 2층 기쁨홀
- 참석대상 : 주민자치회 위원 50명 및 관계자 등
- 회의내용
 - 운영보고
 -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내역
 - 자치회관 수강료 운영내역

 - 활동 보고 및 공유
 -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 2026 사업 진행 현황
 - 주민공론장

 - 논의 안건
 - 2027 마을의제 발굴 및 접수(안)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안)
 - 운영세칙 개정(안)

 - 심의 안건
 - 자치회관 프로그램 변경의 건

 - 기타 사항
 - 적십자회비 특별 모금
 - 주민자치회 일정(안)

 - 구·동정 공지사항

II 운영보고

1 주민자치회 사업비 및 동 지역사업 집행현황

□ 주민자치회 예산 교부내역

(단위: 원)

구분		교부		비고
총계	10,850,000	1차(2/12일)	2차	
운영·사업비	3,250,000	1,625,000		교부금
의제발굴 및 주민총회	7,600,000	3,800,000		

□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현황(2026. 2. 28.)

(단위: 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
총계		10,850,000	137,040	10,712,960	1.26
사업·운영비	소계	3,250,000	55,840	3,194,160	
	사무관리비	1,740,000	17,800	1,722,200	
	공공운영비	540,000	38,040	501,960	
	행사실비지원금	970,000	0	970,000	
의제발굴 및 주민총회	소계	7,600,000	81,200	7,518,800	
	행사운영비	5,600,000	81,200	5,518,800	
	행사실비지원금	2,000,000	2,000,000	2,000,000	

○ 지출내역(2026. 2월)

(단위: 원)

연번	건명	지출내역		금액	비고
	합계			137,040	
1	사업·운영비	사무관리비	인승서 갱신, 명함제작, 신원보증보험료	17,800	
2		공공운영비	kt이용료	38,040	
3	의제발굴 및 주민총회	행사운영비	마을의제 홍보 리플릿 300매	81,200	

□ 동 지역사업 사업운영비 집행현황(2026. 2. 28.)

(단위 : 원)

연번	사업명	예산과목	지출항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	비고
	합계			34,004,000	0	34,004,000		
1	긴급출동 SOS (건강한 어르신 만들기 프로젝트)	소계		5,951,000	0	5,951,000		
		행사운영비	사업물품 구입비	2,134,000		2,134,000		
			강사비	3,200,000		3,200,000		
		행사실비지원금	식다과비	617,000		617,000		
2	행복마을 진관동 합창단	소계		7,651,000		7,651,000		
		행사운영비	사업물품 구입비	1,223,000		1,223,000		
			강사비	5,280,000		5,280,000		
		행사실비지원금	식다과비	1,148,000		1,148,000		
3	살아있는 구파발천 만들어 행복동네 만들자	소계		5,951,000	0	5,951,000		
		행사운영비	사업물품 구입비	3,854,000		3,854,000		
			강사비	1,000,000		1,000,000		
		행사실비지원금	식다과비	1,097,000		1,097,000		
4	(기)후위기대응 (새)활용으로 (자)원순환하는 (실)천활동가	소계		5,951,000	0	5,951,000		
		행사운영비	사업물품 구입비	1,897,000		1,897,000		
			강사비	3,480,000		3,480,000		
		행사실비지원금	식다과비	574,000		574,000		
5	특허받은 효소가 살아있는 보리쌀 된장	소계		8,500,000	0	8,500,000		
		행사운영비	사업물품 구입비	7,191,000		7,191,000		
		행사실비지원금	식다과비	1,309,000		1,309,000		

2 자치회관 수강료 운영내역

□ 2026. 2월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이월액	수입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금 액	30,587,449	61,010	5,154,690	25,493,702	

○ 수 입 : 61,010원

(단위 : 원)

연 번	프로그램수	수강인원	금 액	비 고
	합 계		61,010	
1	20개	635명	61,010	

○ 지 출 : 5,154,010원

(단위 : 원)

연 번	건 명	지출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5,154,690	
1	수강료 반환료	4건	57,920	
2	공공요금 등	카드단말기, 음원저작권, 정수기 임대 등	71,770	
3	강사료 지급(2월)	이00외 19명	5,025,000	

1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p>2월 주요 활동</p>	<p>[2026년 2월 운영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및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05.(목) 18:00 운영진 회의 ○ 2. 12.(목) 18:30 2월 정기회의 ○ 2. 13.(금) 사업추진단별 2026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 2. 26.(목) 16:00 임원진 회의 ▣ 실행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출동SOS(건강한 어르신 만들기 프로젝트) ○ 행복마을 진관동 합창단 ○ 살아있는 구파발천 만들어 행복동네 만들자 ○ (기)후위기대응 (새)활용으로 (자)원순환하는 (실)천활동가 ○ 특허받은 효소가 살아있는 보리쌀 된장 ▣ 2027 마을의제 발굴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23. ~ 마을의제 접수
<p>3월 주요 활동</p>	<p>[2026년 3월 운영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05.(목) 14:00 사무국 교육 ○ 3. 05.(목) 15:00 운영세척 조례교육 ○ 3. 05.(목) 18:00 운영진 회의 ○ 3. 12.(목) 19:00 3월 정기회의, 문화관광분과회의 ○ 3. 26.(목) 15:00 임원진 회의 ▣ 실행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출동SOS(건강한 어르신 만들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생 모집 : 3. 16.(월) ~ 4. 10.(금) ○ 행복마을 진관동 합창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창단원 모집 : 3. 3.(화) ~ 4. 3.(금) ○ 살아있는 구파발천 만들어 행복동네 만들자 ○ (기)후위기대응 (새)활용으로 (자)원순환하는 (실)천활동가 ○ 특허받은 효소가 살아있는 보리쌀 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된장 담그기 행사 : 2026. 3. 17.(화) ~3. 25.(수), 주민센터 5층 장독대 ▣ 2027 마을의제 발굴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12.(목) 17:00 주민공론장 ○ 2. 23. ~ 4. 30. 마을의제 접수 ○ 3. 27.(금) 10:30 다정한마을 분과 동네 한 바퀴

2 5개 사업추진단 사업 진행 현황

※ 선거(6.3일)관련 활동 일정

• 3. 5일 선거관련 활동 시 사직 / 4. 4일~ 행사불가, 모집가능 / 5. 21.~ 회의불가

긴급출동SOS(건강한 어르신 만들기 프로젝트)

○ 활동가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1) 모집기간 : 2026. 3. 16.(월) ~ 4. 10.(금)

2) 모집인원 : 40명(선착순)

○ 교육 기간 : 2026. 6. 4.(화) ~ 7. 2.(목)

○ 봉사활동

- 1차 : 7. 6.(월) ~ 7. 22.(수)

- 2차 : 8. 26.(수) ~ 10. 30.(금)

행복마을 진관동 합창단

○ 합창단원 모집

1) 모집기간 : 2026. 3. 3.(화) ~ 4. 3.(금)

2) 모집인원 : 45명(선착순)

* 합창단원 오리엔테이션 : 4. 3.(금) 14:00

살아있는 실개천 만들어 행복동네 만들자

(기)후위기대응 (새)활용으로 (자)원순환하는 (실)천활동가

특허받은 진관동 효소가 살아있는 보리쌀 된장

○ 된장 담그기 체험행사 자원봉사자 모집

1) 모집기간 : 2026. 2. 23.(월) ~ 2. 27.(금)

2) 모집인원 : 선착순 60명

○ 된장 담그기 체험행사 일정

1) 일시 : 2026. 3. 17.(화)~ 3. 25.(수)

2) 장소 : 주민센터 5층 진달래장독대

3

주민공론장(마을의제 발굴 워크숍)

- 일시 : 2026. 3. 12.(목) 17:00~19:00
- 장소 : 주민센터 2층 기쁨홀
- 대상 : 진관동 주민 누구나
- 내용 : 마을의제 발굴 교육 및 워크숍
- 강사 : 박수정 EDUPLAN 대표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5명(구 지원)
- 공론장(구 모니터링 참석)
 - 1부 : 교육
 - 2부 : 의제 발굴 워크숍(자원활용, 문제해결 방안 등)

IV 논의 안건

1 2027 마을의제 발굴 및 접수

□ 마을의제 발굴 동네 한 바퀴

- 일시 : 2026. 2 ~ 3월말
- 내용 : 분과별로 진행하되, 3월 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마을의제 발굴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7. 2. 23.(월) ~ 4. 30.(목)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운영진 회의 결과
 - 4월 3일(금)까지, 분과 1개, 분과 개인 1개(분과별 2개 이상)제출
 - 기존 수행된 의제를 넘어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제 발굴

2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안) 관련 논의

- 논의 배경 : 자치회관 프로그램 20개 중 접수가 치열한 프로그램의 경우 새벽부터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임. 특히 겨울 한파 기간의 접수 시 긴 시간 대기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진관동 주민 우선 접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음. 2026년 1분기 기준 타동 접수 비율은 11.4%임.
- 운영진 회의 논의 결과 : 진관동 주민을 우선 접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3 운영세칙 개정(안) 논의

- 4월 임원진 회의 및 운영진 회의에서 운영세칙개정위원회 구성
- 4월 중 운영세칙개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운영세칙개정(안) 마련
- 5월 정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1 자치회관 프로그램 변경 심의의 건

□ 제안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②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변경(프로그램 → 동아리)을 심의하고자 함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심의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강사명	운영일시	수강생	변경일자
노래교실	이효금	주1회, 2시간 (월요일 15:00~17:00)	80명	2026. 3. 31. (동아리 전환)

□ 변경 사유

- 강사의 강사료 인상 요청이 있었으나 진관동 자치회관 강사단가(시간당 3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지급 불가함
- 동아리로 전환하여 강사 및 수강생들이 자체 운영하기로 함
* 2.23.(월) 수강생 투표로 동아리 전환 결정 (찬성 : 반대 = 37 : 23)

□ 동의() 비동의()

VI 기 타 사 항

1 2026년도 적십자회비 특별 모금

○ 23명, 560,000원 모금 완료

2 주민자치회 일정(안)

일 정	내 용
3. 03.(화) 09:00	주민공론장 사전접수
3. 03.(화) 09:00	합창단 모집
3. 05.(목) 14:00	사무국교육
3. 05.(목) 15:00	조례 및 운영세칙 교육
3. 05.(목) 18:00	운영진 회의
3. 12.(목) 17:00	주민공론장
3. 12.(목) 19:00	3월 정기회의
3. 12.(목) 20:00	문화관광분과 회의
3. 16.(월) 09:00	긴급출동SOS 교육 참가자 접수
3. 16.(월) ~ 3. 25.(수)	된장 담그기 체험행사
3. 26.(목) 15:00	3월 임원회의
3. 27.(금) 10:30	다정한 마을분과 동네한바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안내

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 제한 사항

- [상시] 선거운동(공선법 제60조 제1항) 및 선거관여(공선법 제86조 제1항) 금지
 - 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선거운동 가능
- [90일 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사전투표참관인 등 제한(공선법 제60조제2항))
 - 해당 직위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위원직 사임해야 함
 -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과원(일반 주민)의 경우 사퇴의무 없음

②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활동 제한 사항' : 선거기간 중('26.5.21.~6.3.)

- [선거기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금지(공선법 제103조 제2항)
 - 선거기간 중 주민자치(위원회) 주도의 회의·모임 금지(월례회의·분과회의 등 포함)
 - ※ '26년 주민자치 지역특화 공모사업은 해당 기간 중 잠정 중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등 포함)'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제한 사항

- [60일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됨(공선법 제86조 제2항 제4호)
 - 시·구 소관 예산을 지원 받는 주민자치회 주관 행사·회의 개최 불가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 통칭 '행사 개최·후원 금지'
 - ※ '26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지원」 사업 운영은 선거일까지 잠정 중단
- [60일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라·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공선법 제86조제2항 제5호)
 - 회의에 지자체장 참석은 금지되고, 소속 공무원 등의 초청도 가급적 지양

□ 허용 내용 : 기존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통상적 운영은 가능

붙임 1 주민자치회 관련 공직선거법 참고 자료

※ 아래 내용을 참고하되, 개별 사례에 따라 해석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람

□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금지사항

○ 상시제한

- **선거운동 제한**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생략)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 대전 ○구 △△△동 주민자치회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위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제57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3282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선거운동 가능

- **선거관여 금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생략)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 1. 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90일 제한('26. 3. 5.)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 제한

※ 입후보는 제한되지 않음(법 53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 (생략)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 ▶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자, 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 등)가 되고자 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함
- ▶ 사퇴의 시기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을 준용해 소속 주민자치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그 시기로 봄
 - ※ 공선법 제60조 2항을 자동 복직의 근거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 위원이 아닌 분과원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는 경우 사퇴의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는 동안은 분과원 활동을 자제
- ▶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불가(선거일전 60일 이후, 공선법 제86조제2항 등 통상적인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사항 참고)

□ 주민자치회의 활동 제한

○ 선거기간 중 제한

- 주민자치회 회의 등 금지 : 각종집회 등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등 포함)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제한

○ 60일 제한('26. 4. 4.)

- 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사업설명회·공청회 위반 사례 (행안부 지침)	사업설명회·공청회 가능 사례 (행안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이 주민대표 간담회, 직능단체 모임 또는 민방위교육 등에 참석하거나, 의견수렴 명목으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자체장이 특별한 현안없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거나 민방위교육 등에 출강하여 당해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 실적, 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동의를 필요한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물 배부 등은 양태에 따라 위반소지)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 설명회는 개최 가능(지자체장 업적 홍보 등은 금지)

“법령에 의하여”에 대한 해석의 범위 (행안부 지침)

-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의 “법령에 의하여”라 함은 행사자체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행사의 시기까지도 금지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법령에 특정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종전의 실시 횟수·대상 등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종전의 실시 시기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어 개최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

※ 분과원 모집은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 방법으로 추진하되, 주민들이 모이는 사업설명회, 행사 등 성격을 띠는 것은 금지됨

(지방자치단체장 성명(사진 포함),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것은 그 시기·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86조 제5항, 제93조 등에 위반)

□ 주민자치회 활동가능 사항 검토

○ 분과위원회 자체활동 (분과 회의, 지역조사 등)

- 주민자치회 주도로 진행되는 분과위원 회의·모임 및 지역조사는 가능. 다만 선거 기간 중 모든 활동은 금지
 - ▶ 주민자치회에서 의결 또는 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횟수로 분과회의 개최할 것
 - ▶ 분과회의 개최는 목적달성에 비해 과도하게 잦거나 길지 않을 것
 - ▶ 분과모임은 사전에 등록·구성된 분과위원만 참여(폐쇄적) 가능하나, 일반 주민이 갑작스레 참여(인터뷰 등)하는 열린 회의는 “60일 제한”에 따라 금지
 - ▶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다과 등은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선거기간에는 분과 모임 및 활동 금지
 - ▶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금지, 공무원(동장, 주민자치 담당팀장 등) 초청은 가능하나 가급적 사양 ※사·구의원 참석 가능 여부는 선관위에 별도 질의바람

○ **분과위원회 행사 (워크숍 등)**

- 60일 제한 중 시비 등 지원을 받는 주민자치회 주관 행사 불가

※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의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선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 행사에 해당됨

○ **주민자치회 내부회의 및 주민총회·성과공유회 개최**

- 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으로 보고 진행하되, 선거기간에는

불가능

- ▶ 주민자치회 내부회의에 해당, 간사비 지급 등 실비 지원 가능

- ▶ 단,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잦은 회의, 과도한 간식비 제공 등 금지

- 주민총회·정책공유회 개최는 60일 제한에 따라 진행 불가

- 선거기간 중에는 주민자치회 주도의 회의, 모임 금지

○ **자치회관 운영**

- 자치회관(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활동은 가능

-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

전하여 실시하는 교양강좌 후원은 금지

은평구미래교육센터:온빛 운영 안내

□ 은평구 일대일 맞춤형 진로설계 컨설팅 참여자 모집

- 일 시 : 2026. 3. 28. ~ 4. 25. 매주 토요일(총 5회) 09:00~18:00
- 장 소 : 은평구미래교육센터 진로진학상담실 “미래On”
- 대 상 : 은평구 관내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및 학부모
- 인 원 : 각 회당 10명(회차별 교육급여 수급자 50% 우선 배정)
- 내 용 : 학생 개인에 맞춘 진로 로드맵 수립 및 교육 과정 설계 컨설팅
- 상담시간 : 1인당 1시간(사전상담 20분, 컨설팅 40분)
- 모집기간 : 2026. 3. 11.(수) 09:00 ~ 3. 18.(수) 18:00
- 신청방법 : 은평구 평생학습관 누리집(수강신청-청소년 진로진학)
- 문 의 : 은평구미래교육센터 진로진학팀(☎02-351-3099, 02-352-9685)

□ 창의ON 클래스 3월 참여자 모집

교육일	교육시간	교육내용	대상	인원
3/16(월)~3/17(화)	15:30~17:00	레고스파이크 에센셜 체험	초 3~4	6명
3/23(월)~3/24(화)	15:30~17:00	레고스파이크 프라임 체험	초 3~4	6명
3/20, 27, 4/3, 4/10 (매주 금)	15:30~17:00	버티플라이 코딩드론 기초반	초 3~4	10명
3/14, 21, 28 4/4 (매주 토)	10:00~12:00	휴머노이드 로봇 교실	초 5~6	6명
	13:00~15:00	AI Arm 로봇 교실	초 5~6	6명

모집기간 2026년 2월 27일~마감시 (선착순)

신청방법 은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내 [수강신청]-[미래교육]

- 문 의 : 은평구미래교육센터 (☎ 02-352-9686)